

## □ 전국세관 신속통관 지원팀 연락처

세관명	신속통관 지원팀 현황		세관명	신속통관 지원팀 현황	
	부서	연락처		부서	연락처
인천(항만)	인천항수입1과	032-452-3545	경남남부	통관지원과	055-639-7515
인천(공항)	공항수입1과	032-722-4212	경남서부	수입업무 담당	055-750-7903
김포공항	통관지원과	02-6930-4922	대구	통관지원과	053-230-5223
국제우편	우편통관과	032-720-7423	울산	통관지원과	052-278-2259
수원	통관지원과	031-547-3948	구미	통관지원과	054-469-5613
안산	통관지원과	031-8085-3870	포항	통관지원과	054-720-5713
서울	수입과	02-510-1158	속초	통관지원과	033-820-2126
안양	통관지원과	031-596-2063	동해	수입업무 담당	033-539-2676
천안	통관지원과	041-640-2355	광주	통관지원과	062-975-8046
청주	통관지원과	043-717-5787	광양	통관지원과	061-797-8426
성남	수입업무 담당	031-697-2593	목포	통관지원과	061-460-8515
파주	수입업무 담당	031-934-2809	대전	통관지원과	042-717-2234
부산	수입과	051-620-6212	여수	통관지원과	061-660-8631
김해공항	통관지원과	051-899-7232	군산	통관지원과	063-730-8718
용당	통관지원과	051-793-7143	제주	통관지원과	064-797-8815
양산	통관지원과	055-783-7341	전주	수입업무 담당	063-710-8955
창원	통관지원과	055-210-7615	평택	수입과	031-8054-7097
마산	통관지원과	055-981-7022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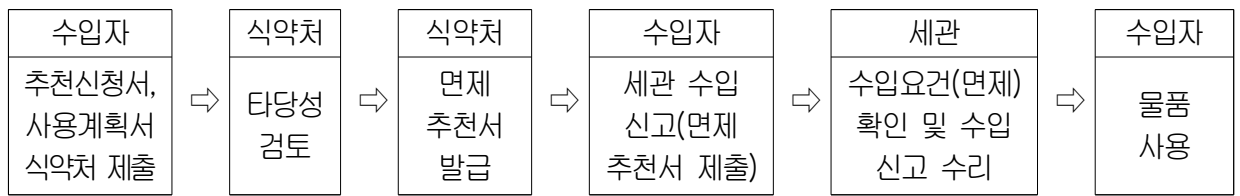
## □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요건구비(면제추천) 문의 연락처

구분		부 서 명	연락처
면제추천서 발급 문의		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	(총괄) 043-719-1293 043-719-1295, 1296
수입요건 구비 문의	최초 품목허가	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허가총괄팀	(총괄) 043-719-2328 (담당) 043-719-2333
	수입업 신고, 품목허가	서울지방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	02-2640-1413
		부산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	051-602-6187
		경인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	02-2110-8097, 8072
		대구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	053-589-2757
		광주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	062-602-1541, 1455
대전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	042-480-8768		

## ① 면제추천 절차(구호·기부용과 기업의 직원 지급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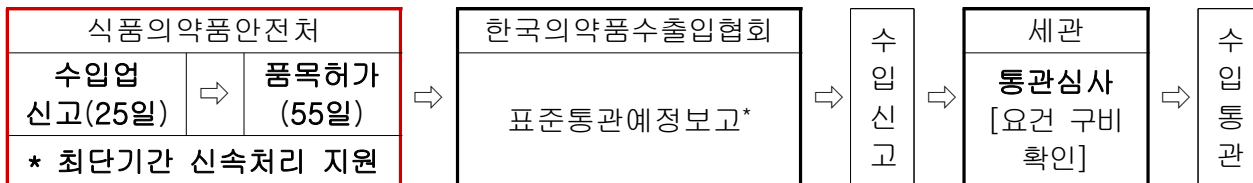
- 대상물품 : 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(HS부호: 6307.90.9000)
- 추천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(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)
- 시행기간 : ~ 2020.6.30.(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까지)
- 추천기준 : 구호용 및 이에 준하는 것
  - (예시①) 해외 본사 등에서 국내지사 직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(비상업적 목적)
  - (예시②) 기부 등의 목적으로 반입
- 신청방법 : 전자민원 신청(추천신청서 1부, 사용계획서\* 1부)
  - \* 신청인 정보(명칭, 소재지, 사업자등록번호 등), HS부호(마스크 6307.90.9000호), 품명 및 규격, 수량, 제공목적(직원지급용, 기부용 등) 및 방법(배부시기 및 기준 등), 사용기관 정보(명칭, 소재지, 사업자번호 등), 회사직인, 대표자 서명 등 포함
  - ※ 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, ☎1544-9563) > 전자민원 > 전자민원신청 > 민원사무검색 > 의약품 > 14번 단순민원 수입요건확인 면제신청
- 안내문의 :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수급지원팀  
[☎ 043-719-1295, 1296]

## ○ 수입통관 절차



## ② 수입요건 구비절차(상업 판매용)

## ○ 의약외품(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)



\* 관세청 유니패스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